

## 【 11 】 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6. 4 . . .

제출자 : 양주시장

### 1. 제안이유

- 「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」 제정 예정으로 양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이 통합심의위원회로 이전되므로 일부를 개정하고
- 「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개정으로 기금출납담당주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“위원회 설치 및 구성” 부분을 일부 개정 및 삭제(안 제6조)
- “위원회 기능 및 회의” 등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(안 제7조 ~ 안 제10조)
- 기금출납원을 노인정책담당으로 명칭 변경(안 제11조)

# **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**

**개정구분** : 부분개정

## **□ 개정이유**

- 「양주시 기금운영 통합심의위원회 조례」 제정 예정으로 위원회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삭제함.
- 「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개정으로 담당주사 명칭 변경

## **□ 주요골자**

- “위원회 설치 및 구성” 부분을 일부 개정 및 삭제(안 제6조)
- “위원회 기능 및 회의” 등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(안 제7조 ~ 안 제10조)
- 기금출납원을 노인정책담당으로 명칭 변경(안 제11조)

**개정조례안** : < 불임 1 > 참조

**신 · 구조문 대비표** : < 불임 2 > 참조

**관계법령발췌서** : < 불임 3 > 참조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

**관련사업계획서** : 해당없음

**예산수반사항** : 해당없음

**입법예고** : 해당없음

**기타 참고사항** : 해당없음

< 별임 1 >

양주시 조례 제 호

## 양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양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목 “양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”를 “양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기금의 재원 및 사용”을 “기금의 사용”으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한다.

제4조 중 “①기금은”을 “기금은”으로 하고, ”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를 “기금운용 심의위원회”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)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  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  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③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.

제7조,제8조,제9조,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노인업무담당”을 “노인정책담당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불임 2 >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</p> <p>제2조(기금의 설치) ①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<u>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.</p>	<p><u>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</p> <p>제2조(기금의 설치) ①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<u>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 제3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.</p>
<p><u>제3조(기금의 재원 및 사용)</u>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2005년까지 10억 원 이상 조성한다.</p> <p>1. 일반회계 출연금 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</p>	<p><u>제3조(기금의 사용)</u> ①</p> <p>&lt;삭제&gt;</p>
<p>제4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인봉사활동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.</p> <p>1.~5.(생략) 6.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<u>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</u>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	<p>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</p> <p>1.~5.(현행과 같음) 6.— 등 <u>기금운용심의위원회</u>에서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</p>
<p><u>제6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</u></p> <p>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되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	<p><u>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)</u></p> <p>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</p> <p>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.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</p>

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, 사회복지과장 및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대한노인회양주시지회장이 추천하는 1인과,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임기가 만료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⑥ 위촉직 위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촉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1.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

2. 당해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

3.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 
제7조(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)

① 위원회는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
2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
3.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③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.

④ <삭제>

⑤ <삭제>

⑥ <삭제>

제7조 <삭제>

<p><u>제8조(위원장의 직무)</u></p> <p>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<u>제8조</u> <u>&lt;삭제&gt;</u></p>
<p><u>제9조(간사·서기 및 수당)</u></p> <p>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인을 두되, 간사는 노인업무담당주사가 되고, 서기는 노인업무담당직원이 된다.</p> <p>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.</p> <p>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주시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예산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<u>제9조</u> <u>&lt;삭제&gt;</u></p>
<p><u>제10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</u></p> <p>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되,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<u>제10조</u> <u>&lt;삭제&gt;</u></p>
<p><u>제11조(회계공무원) ①(생략)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기금출납원 : <u>노인업무담당</u></li> </ol> <p>②(생략)</p>	<p><u>제11조(회계공무원) ①(현행과 같음)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기금출납원 : <u>노인정책담당</u></li> </ol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】 - 2006. 1. 1 시행

제13조 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  2.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  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】 - 2006. 1. 1 시행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)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